KNUH 칠곡경북대학교병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LGOK HOSPITAL

2026년 11월 2차 임시직원 채용공고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시 북구 소재)에 근무할 임시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모집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비고
직종	직무				
임시직	약사	2명	○임상시험센터 근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필수) 약사 면허 소지자	신규
	간호사	1명	○외래간호과 근무 ○진료과 전담간호사 업무 등	※다음의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필수1) 간호사 면허 소지자 (필수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2026.8.11.)」 제3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붙임 참조 (단,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경우 제외)	경력
	운영지원A (청소)	1명	○총무과 근무 ○원내 각종 청소 업무 등	(필수) 고령자(만 60세 이상인 자) ※2026.11.19.(목) 기준	신규
	운영지원B (청소)	1명	○총무과 근무 ○외곽청소 및 원내 폐기물, 비품이동 업무 등	자격무관	신규

* 모집분야별 계약기간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자

※ 지원 자격에 면허(자격)증 소지자 요구 시, 면허(자격)의 합격증으로 갈음할 수 없음

※ 운영지원(청소)의 경우 각각 근무형태가 다른 두 분야 동시 모집으로 채용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간호사 지원자의 경우 반드시 지원서 제출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4-다 증빙자료 제출 참조)

2 근무조건 및 처우

가. 임금

- **약사**: 세전 약 550만원/월
- **간호사**: 세전 약 305만원/월
- **운영지원(청소)**: 세전 약 253만원/월

※ 명절수당, 휴가비 등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 약사 직종 기타 제수당 지급 없음

나. 계약기간 및 근무형태

모집부문		근무부서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시간)	비고
직종	직무			
임시직	약사	임상시험센터	임용일로부터 ~ 1년까지 (정규인력 충원 시 계약 종료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통상근무(08:30 ~ 17:30, 주 5일[월~금])	한시적
	간호사A	외래간호과	임용일로부터 ~ 2027.8.27.까지 (원직자 조기복직 시 계약 종료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통상근무(08:00 ~ 17:00, 주 5일[월~금])	대체
	운영지원A (청소)	총무과	임용일로부터 ~ 1년까지 (정규인력 충원 시 계약 종료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 평일근무(주 5일[월~금]) 06:00 ~ 15:00 또는 06:30 ~ 15:30 ※ 주말근무(토 또는 일) 06:30 ~ 15:00 ※평일(14:00~22:00 및 주말 오후(14:00~21:00) 근무 가능성 있음	고령자
	운영지원B (청소)	총무과	임용일로부터 ~ 2026.12.24.까지 (원직자 조기복직 시 계약 종료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 평일 및 주말(토 또는 일) 근무 ·평일(월~금) 06:30 ~ 15:30 ·주말(토 또는 일) 06:30 ~ 15:00	대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업무 특성상 기간제 업무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는 무관함

※정규인력의 충원이나 원직자의 복직 등으로 채용사유 소멸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다. 복리후생

○ 본인 진료비 감면, 복지포인트(6개월 이상 근무 시), 통근버스 운행, 직원 식당 식비 지원, 연수원 이용, 4대 보험 가입 등

3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3차 신체검사/기재사항 진위 확인 → 임용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합격자 개별연락)

※ 모집인원별 적격 지원자가 아래 배수 이내 시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음

- 1명: 10배수, 2~4명: 5배수, 5~9명: 3배수, 10명 이상: 2배수

나. 동점자 처리기준

1)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면접전형 실시

2)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정점수 고득점자 순, 서류전형 평정점수 고득점자 순, 면접전형 평정항목별(전문성, 표현력, 예절, 적극성 순) 고득점자 순, 외부위원 서류전형 평정점수 고득점자 순

4 지원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지원서 제출기간: 2026. 11. 14.(토), 13:00 ~ 2026. 11. 19.(목), 13:00

나. 지원서 제출방법: 홈페이지 공고 하단의 이력서 '접수하기'를 통한 접수

다. 증빙자료(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제출 (간호사 직종에 한함)

※증빙자료는 임상경력 및 진료지원업무 수행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 내용 등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검증을 위해 활용되며, 평가 외 사항(성명, 연락처 등)은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본원 채용 플랫폼에서 지원서 최종 제출 후, 증빙서류는 스캔(사본)하여 컴퓨터 파일(PDF 등) 형태로 이메일(knumc-hiring@knuh.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과 파일명을 응시분야, 수험번호 및 성명으로 하여 제출할 것)

3)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5 제출 서류

가. 신규 임용 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필수 관련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채용신체검사서(감염성 질병 관련 검사 포함) 1부
6) 통장 사본 1부
7) 증명사진 2장

나. **서류 제출은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함**

다. 입사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내역이 다를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우리기관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인적사항 기재를 일체 금지함**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착오를 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및 전형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 통지함

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경우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장애인의 경우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10% 가산함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특히,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해당 가점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인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부여함**

바. 현재 진행 중인 본 채용공고 직무 간 복수 지원 불가함

사.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필요)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담당자(053-200-2026)으로 문의바람

2026년 11월 14일

칠 곡 경 북 대 학 교 병 원 장

붙임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자격요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제정]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044-202-2694

제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이하 "진료지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간호사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상경력(이하 "임상경력"이라 한다) 및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2.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187호,2026. 7. 10.>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간호사는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임상경력 3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부칙 제5조에 따라 임상경력 3년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간호사
2.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